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15 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:)		
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		(운행형태:)		
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				
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				
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				
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(법 제4조제3항 관련)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· 도 지 사		귀하		
		수수료	기본 14,000원, 자동차 1대당 2,000원 추가	
첨부 서류	1.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. 사업계획서 1부 나.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.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라.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(운행예정 노선의 기점, 종점,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) 바.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사.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) 1부,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			
	2.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. 사업계획서 1부 나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.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	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
신고인(대표자)			(서명 또는 인)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